

대학원 학연협동 석·박사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대학원 학·연합동 석·박사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이 운영위원회는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학·연합동(한국항공대학교-한국항공우주연구소) 석·박사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가 교육인력, 시설, 실험, 실습기자재를 공동으로 연계 활용하여 산업체의 과학기술개발에 필요로 하는 전문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항대 대학원내에 설치한 학·연합동 석·박사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은 항대와 연구원이 협동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원칙적으로 대학원의 학칙에 따르기로 하고, 이 과정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전공분야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에 관한 제 규칙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항대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연구원의 선임 또는 책임급 직원 중에서 연구소 소장이, 각각 추천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를 항대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 및 연구소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양측에 각 1인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7조** (회의 소집과 의결) 회의 소집과 심의에 관하여서는 본 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및 기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